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(1)] <개정 2022. 3. 18.>

#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즉시 |
|---|---|---|

| ❶ 신청인 | ① 상호 또는 법인명 | ② 사업자등록번호 |
|---|---|---|
| | ③ 대표자 성명 | ④ 생년월일 |
| |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 : ) | |

| ❷ 과세연도 |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|
|---|---|

❸ 세액공제 계산내용

가. 경력단절 여성

| | ⑥ 성명(생년.월.일) | ⑦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| ⑧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 사유 여부 (혼인일,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) |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·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|
|---|---|---|---|---|
| A | ( . . ) | [ ]여, [ ]부 | [ ]여, [ ]부( . . ) | [ ]여, [ ]부 |
| B | ( . . ) | [ ]여, [ ]부 | [ ]여, [ ]부( . . ) | [ ]여, [ ]부 |
| C | ( . . ) | [ ]여, [ ]부 | [ ]여, [ ]부( . . ) | [ ]여, [ ]부 |
| D | ( . . ) | [ ]여, [ ]부 | [ ]여, [ ]부( . . ) | [ ]여, [ ]부 |
| E | ( . . ) | [ ]여, [ ]부 | [ ]여, [ ]부( . . ) | [ ]여, [ ]부 |

나.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

| | ⑩ 종전 입사일자 | ⑪ 종전 퇴직일자 | ⑫ 재입사일자 | ⑬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 내 재입사 여부 | ⑭ 인건비 지급액 | ⑯ 공제율 | ⑰ 세액공제금액 (⑮×⑯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A | | | | [ ]여, [ ]부 | | | |
| B | | | | [ ]여, [ ]부 | | | |
| C | | | | [ ]여, [ ]부 | | | |
| D | | | | [ ]여, [ ]부 | | | |
| E | | | | [ ]여, [ ]부 | | | |
| 합 계 | | - | - | - | ⑮ | | |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세무서장** 귀하

## 작 성 방 법

1. ⑧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 사유 여부(혼인일,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)란에는 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으로 퇴직했는지 여부와 혼인일, 임신 또는 난임시술 연월일을 적습니다. 이 경우 혼인일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일자로 하며, 임신일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추정되는 임신일자를 적습니다.
2. ⑯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%, 중견기업은 15%를 적용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의2서식(2)] <개정 2021. 3. 16.>

#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
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즉시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❶ 신청인 | ① 상호 또는 법인명 | ② 사업자등록번호 |
| | ③ 대표자 성명 | ④ 생년월일 |
| |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 : ) | |

| ❷ 과세연도 |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|
|---|---|

❸ 세액공제 계산내용

가. 육아휴직 복귀자

| | ⑥ 성명(생년.월.일) | ⑦ 종전 근무기간 1년 이상 여부 | ⑧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여부 (휴직시작일 ~ 종료일) | ⑨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·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 여부 |
|---|---|---|---|---|
| A | ( . . ) | 여, 부 | 여, 부( . . ~ . . ) | 여, 부 |
| B | ( . . ) | 여, 부 | 여, 부( . . ~ . . ) | 여, 부 |
| C | ( . . ) | 여, 부 | 여, 부( . . ~ . . ) | 여, 부 |
| D | ( . . ) | 여, 부 | 여, 부( . . ~ . . ) | 여, 부 |
| E | ( . . ) | 여, 부 | 여, 부( . . ~ . . ) | 여, 부 |

나. 공제세액 계산

| | ⑩ 인건비 지급액 | ⑫ 공제율 | ⑬ 세액공제금액 (⑪×⑫) |
|---|---|---|---|
| A | | | |
| B | | | |
| C | | | |
| D | | | |
| E | | | |
| ⑪ 합계 | | | |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세무서장** 귀하

## 작 성 방 법

1. ⑧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지 여부와 육아휴직 시작연월일과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.
2. ⑫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0%, 중견기업은 15%를 적용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